

약사 면허신고제도 개요

□ 약사 면허신고제도 개요

- 시행일 : 2021.4.8.(2020.4.7. 약사법 개정)
- 최초 일괄신고 기간 : 2021.4.8. ~ 2022.4.7.까지(1년간)

제7조(약사·한약사 신고)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[시행일 : 2021. 4. 8.]

□ 약사 면허신고 주기

- (2021.4.7 이전 면허 취득자) 법 시행 후 1년 내(2021.4.8~2022.4.7)에 일괄 신고, 이후 매 3년 마다 신고

- 1) 2021.4.8.~2021.12.31. 신고 : 다음 신고는 2024.1.1.~12.31.
- 2) 2022.1.1.~2022.4.7. 신고 : 다음 신고는 2025.1.1.~12.31.

☞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

- * 본인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(lic.mohw.go.kr)

- (2021.4.8.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) 면허를 발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

- * (예) 2021. 5월 면허 발급자의 신고 기한은 2024.1.1.~2024.12.31.

□ 최초 일괄 면허신고 업무 개시

- (면허신고 개시) 2021.7.1일부터

- ※ 다만,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면허신고시스템(가칭_비회원 전용 웹사이트)을 일괄신고 기간 종료 전 구축 예정